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23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4.

3. 회부연월일 : 2025.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 과밀화,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이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65호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20665호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u>제4장 보칙</u> <u>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도시 지역에서도 폐교가 발생하는 등 학교의 소규모화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 선호도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학생 쏠림현상으로 특정 도시 지역에서는 학교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 및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통폐합 위기의 소규모학교(전교생 300명 이하)는 2014년 4,324개소에서 2024년 5,074개소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014년 48개에서 2024년 211개로 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¹⁾, 지역별 학령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2024년 기준 과밀학급

(전체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학급)은 38,77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소규모학교 증가 현황(전국)>

구분	학교급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4년	2014년 대비 2024년
소규모 학교수 (개교)	초	2,863	2,870	2,865	2,925	3,135	272교 증가(9.5% 증가)
	중	1,087	1,194	1,274	1,305	1,380	293교 증가(27.0% 증가)
	고	374	399	442	532	559	185교 증가(49.5% 증가)
	계	4,324	4,463	4,581	4,762	5,074	750교 증가(17.3% 증가)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기준(300명)으로 산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당연도 교육통계 4.1. 기준, 특수학교·대안학교 및 휴교중인 학교 제외)

<최근 3년간 지역별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 현황>

(각 년도 4월 기준, 단위: 학급, %)

시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학급	과밀학급	과밀비율	전체학급	과밀학급	과밀비율	전체학급	과밀학급	과밀비율
계	235,709	44,764	19.0	235,020	42,523	18.1	234,531	38,774	16.5
서울	35,912	5,592	15.6	35,199	5,407	15.4	34,432	5,588	16.2
부산	13,583	1,550	11.4	13,516	1,405	10.4	13,486	1,305	9.7
대구	10,771	1,521	14.1	10,689	1,475	13.8	10,455	1,586	15.2
인천	13,232	2,828	21.4	13,445	2,926	21.8	13,347	3,063	22.9
광주	7,560	838	11.1	7,528	774	10.3	7,498	631	8.4
대전	7,295	994	13.6	7,198	881	12.2	7,114	786	11.0
울산	5,744	659	11.5	5,678	699	12.3	5,611	758	13.5
세종	2,735	15	0.5	2,851	10	0.4	2,863	98	3.4
경기	60,394	18,658	30.9	60,349	18,348	30.4	61,489	15,031	24.4
강원	7,608	819	10.8	7,541	844	11.2	7,450	878	11.8
충북	7,864	1,185	15.1	7,788	1,116	14.3	7,836	1,065	13.6
충남	10,998	2,711	24.6	11,153	2,411	21.6	11,204	2,391	21.3
전북	9,569	1,190	12.4	9,560	1,021	10.7	9,493	784	8.3
전남	9,739	1,147	11.8	9,711	1,052	10.8	9,676	947	9.8
경북	12,587	816	6.5	12,545	635	5.1	12,416	525	4.2
경남	16,747	3,232	19.3	16,856	2,671	15.8	16,756	2,556	15.3
제주	3,371	1,009	29.9	3,413	848	24.8	3,405	782	23.0

자료 : 교육부

1) <서울 소규모학교 추이>

구분	학교급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4년	2014년 대비 2024년
소규모 학교수 (개교)	초	39	46	54	77	111	72교 증가(184.6% 증가)
	중	9	20	25	45	74	65교 증가(722.2% 증가)
	고	0	0	4	11	26	27교 증가(순증)
	계	48	66	83	133	211	163교 증가(339.6% 증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유형인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음²⁾.

동 법률의 도시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적용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³⁾, 학교의 소멸과 과밀이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등⁴⁾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관 등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형캠퍼스”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 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인구 20만 이상 도시 : 44개 일반자치단체에 해당

(경기도)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성남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 제주시

4) 제6조(유형 및 종류) ①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2.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도시형캠퍼스는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임에도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 없어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개별법에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캠퍼스 설립의 활성화 및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교육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신도시 등 특정 지역의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설립으로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폐교 현황(특별·광역시, 인구 20만 이상 대도시)>

시도명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계	13	3	-	16	6	2	-	8	6	3	-	9	5	2	1	8	9	1	3	13	39	11	4	54
(광역,특별)	5	3	-	8	1	-	-	1	1	2	-	3	3	1	-	4	-	1	3	4	10	7	3	20
서울	1	1	-	2	-	-	-	-	-	-	-	-	1	-	-	1	-	-	3	3	2	1	3	6
부산	2	1	-	3	1	-	-	1	1	2	-	3	-	-	-	-	-	-	-	-	4	3	-	7
대구	-	1	-	1	-	-	-	-	-	-	-	-	-	1	-	1	-	1	-	1	-	3	-	3
인천	-	-	-	-	-	-	-	-	-	-	-	-	2	-	-	2	-	-	-	-	2	-	-	2
광주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2	-	-	2	-	-	-	-	-	-	-	-	-	-	-	-	-	-	-	-	2	-	-	2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	-
(20만도시)	8	-	-	8	5	2	-	7	5	1	-	6	2	1	1	4	9	-	-	9	29	4	1	34
경기	3	-	-	3	1	1	-	2	-	-	-	-	-	-	-	-	2	-	-	2	6	1	-	7
강원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	-	-	3	-	-	-	-	-	1	-	1	1	1	1	3	-	-	-	-	4	2	1	7
충남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1	-	-	1	-	-	-	-	1	-	-	1	2	-	-	2	4	-	-	4
전남	2	-	-	2	2	-	-	2	4	-	-	4	-	-	-	-	4	-	-	4	12	-	-	12
경북	-	-	-	-	1	1	-	2	1	-	-	1	-	-	-	-	1	-	-	1	3	1	-	4
경남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교육부

2.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지역유형별 분교 현황

<시도교육청 지역유형별 분교 현황>

(단위: 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전체 학교	분교	비율 (%)	전체 학교	분교	비율 (%)	전체 학교	분교	비율 (%)	전체 학교	분교	비율 (%)	전체 학교	분교	비율 (%)
계	10,312	172	1.7%	2,849	9	0.3%	3,430	1	0.0%	3,471	46	1.3%	562	116	20.6%
초	6,249	156	2.5%	1,666	7	0.4%	1,985	1	0.1%	2,204	38	1.7%	394	110	27.9%
중	2,646	15	0.6%	792	1	0.1%	881	-	0.0%	855	8	0.9%	118	6	5.1%
고	1,417	1	0.1%	391	1	0.3%	564	-	0.0%	412	-	0.0%	50	-	0.0%

○ 분교의 '도시형캠퍼스' 유형별 분류

(단위 : 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개편형	신설형	계	개편형	신설형	계	개편형	신설형	계	개편형	신설형	계	개편형	신설형	계
계	170	2	172	7	2	9	1	-	1	46	-	46	116	-	116
초	156	-	156	7	-	7	1	-	1	38	-	38	110	-	110
중	14	1	15	-	1	1	-	-	-	8	-	8	6	-	6
고	-	1	1	-	1	1	-	-	-	-	-	-	-	-	-

○ 특별·광역시, 인구 20만 이상 대도시 분교의 '도시형캠퍼스' 유형별 분류

(단위 : 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개편형	신설형	계	개편형	신설형	계	개편형	신설형	계	개편형	신설형	계	개편형	신설형	계
계	61	2	63	7	2	9	1	-	1	27	-	27	26	-	26
초	57	-	57	7	-	7	1	-	1	23	-	23	26	-	26
중	4	1	5	-	1	1	-	-	-	4	-	4	-	-	-
고	-	1	1	-	1	1	-	-	-	-	-	-	-	-	-